

제59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2월 1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2월 1일 상오 10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응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삼성, 강영낙, 김일섭 의원

6.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장건식

7. 의사일정

○ 제59회 목포시의회 폐회식

◇서기 박찬대의 사회로 제59회 목포시의회의 개회식이 있었음

◇부의장 정응표

- 제2대 지방의회 구성이래 최초의 정기회의 개회식을 개최하여 있어 간단히 개회사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차 회기는 신년도 각종예산안 심의 및 각 조례개정안등 실로 중차대한 회기로서 우리 의회의 신념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맡은바 의무를 완전 수행할 것이며 이로 알미암아 시민의 신뢰감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번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재삼부탁 하는

바입니다.

○ 축전보고

◇서기 박찬대로부터 광주시 총무과장 박재수씨로부터 발신한 당시 의회 개회식 축하 전문 낭독이 있었음

◇정응표 부의장

- 폐회 선언.

(상오 10시 4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이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2월 2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천 출 주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59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2월 17일 상오 11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2월 17일 상오 12시 정각
3. 장 소 : 목포시청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
출석의원 11명
결석의원
김경인(지참), 정응표(지참), 박두순(지참), 김남진(지참) 강영낙(지참)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총무과장 장건식 및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김용준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1. 제58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58회 제2차 회의록 통과
 3. 제59회 제1차 회의록 통과
 4. 12월 6일자 개최 내무분과위원회 상황보고
 5. 부산여객차량 증결요청 건의문 및 권고문 발송상황 보고
 - ◆ 부의안건
 1.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단기 4290년도 목포시 동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국민 재건 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단기 4288년도 제6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7. 단기 4288년도 제5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8. 단기 4290년도 일시차입의 건
9.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10.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일시 차입의 건
11. 목포시 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안
12. 목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13. 목포시 도살장 사용료 조례 개정안
14.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
15. 목포시 공동 하양장 사용 조례 개정안
16. 시립 목포 병원 조례 개정안
17. 목포시 국민 재건 주택특별 회계 설치안
18. 목포시유 재산 매각 처분의 건
19. 시유재산 매입의 건
20. 시유건물 처분의 건

◆ 토의사항

◇김상성 의장

- 금조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당시 역사적 건물인 의의회의사당을 소실한데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유감스러운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차속개되는 회의는 명년도 각종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개정안 등 중요한 아건을 심의케 될 것인바 바라며 시장님으로부터 행하여질 시정방침 연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8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58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59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김경인, 정응표, 강영낙, 박두순 의원 참석. (11시 50분)

※ 김남진 의원 참석, 16명 전원. (11시 53분)

○ 내무 분과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거 12월 6일자 개최 내무분과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를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

(의장명의거)

◇김삼성 의장

- 방금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시유재산 감정위원회를 재차 선정하도록 결의한 바 있사오니 본 건 심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표 의원

- 초대의회에서는 시유재산감정위원으로 의회측에서 5인이 선정되었던 부분 의원도 그 중의 1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물가지수의 변동이 극심하여 현시가에 부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내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전 의원이 공통적으로 보아야 할 문제이오니 본 건 감정위원을 갱히 3인 정도 선출토록 할 선정방법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3칭

표결 결과 재적 16명 만장일치로 가결

감정위원으로는 정응표, 김남진, 임석희 의원을 지명

◇정응표 의원

- 병신년을 순여에 앞두고 금조 새벽 불의의 화재로 말미암아 당시 의회의 사당 상공회의소 외국원조기관인 OEC사무소등을 소실케 된대 대하여는 진실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연락도 접수 못한채 의회출석자 의사당으로 향하여 그 실정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거반 소실된 남교동 시장 화재 사건으로도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었다 하여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킨 바도 있거니와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라도 그 경의 건물소유자 원인 방화 책임자들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여야 할 것이 긴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건식 총무과장

-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목하 사직 당국에서 조사중이오니 미상이며 건물은 시유재산으로 되어있고 대지는 상공회의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책임자는 역시 상공회의소일 것이며 해건물소실 및 회의장소 변경 통지는 조조직원을 시켜 접수불능인 의원이 계신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창희 의원

- 측문한 바 화재의 우인은 그 건물내에 있는 개발주식회사 창립사무소 내에서 발화한 것 같은데 건물의 소유가 시라면 그 사무소 대여 당초의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표 의원

- 겸하여질의 하겠으나 현재입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등의 대여관계 등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장

- 대체로 건물은 시소유 대지는 상공회의소 소유로 되어 있으나 왜정하부터 2층건물은 시에서 관리하여 왔고, 하층건물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였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의 수리관계등도 엄연히 구별하여 실시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OEC사무소 대여시는 계약서 같은 것은 없으나 그 당시 의장과 상의
하여 상공회의소의 승낙을 얻어서 대여하였든 것이나 그 외는 상공회의소
독단적으로 대여한 것입니다.

◇강영낙 의원

- 금조 4시반경 싸이렌 취명을 듣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장에 가본 사실
이 있습니다.

마땅히 본 건에 대하여는 개회벽두 집행부 책임자의 해명과 도의적 책임자
인 의장의 경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발언으로써 이
문제를 논의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금 화재현장에 시민이 운집하여 초조한 감을 가지고 있을 곳이니 질의 토
론을 종결하고 오전회의를 휴회하여 조사위원 5인을 구성 그 진상을 조사할
것을 동의

위원선정방법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재청---3청

◇김성균 의원

- 거반 제1차 회의시에도 개회식만으로 폐의한 데 대하여 모지상에 우리
의회에서 중대한 예산안 심의를 천연한 것처럼 의아심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며 금일의 부의안건이 각기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이오니 의사
일정대로 종료하고 조사토록 하는 것이 가타고 사 되는 것입니다.

◇강영낙 의원

- 예산안 심의등도 중요한 안건이나 의사당이 소실되었으니 회의장소 등
시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하오니 오전회의 휴회동의를 수정하여 금일과 명일의 휴기를 휴회하고
재명 19일 회의 개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응표 부의장

- 그일 화재로 말미암아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일대충격과 마음의 변동을

안 이르기까지 없는 것입니다.

저번 남교동 시장을 일순에 소진시켜 전체 시민의 지대한 고충을 초래한 바 있었고 그 복구 예산안이 상정되는 이 마당에 의사당이 또 소진 된 것입니다.

금일 화재에 있어서도 소방차는 즉시출동 되었으나 소화수가 없어서 원활한 작업을 못하게 된다고 자탄하는 서장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점을 고찰하여볼 때 기유시설 확보에 대한 우려로 앓을 수 없으며 방화용 탱크의 관수 불충분인지 보수불충분인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 상식으로라도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영낙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삼성 의원

- 집행부측의 제반형편이 있는 것 같으니 시장님의 시정방침연설을 청취한 후 후회하는 것이 같다고 봅니다.

강영낙 의원 동의.

표결 결과 재적 16명중 가 12표 가결

◇강영낙 의원

- 지방의회가 국회와 같이 각 정당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시유재산 감정위원 3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자유 구락부 소속의원만을 선출하였음은 의장의 편파적인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삼성 의원

- 시유재산 감정위원 3인을 선정하는데 정치적이나 편파적인 의의는 일초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중 2인 과거의 경험자이기 때문이고 1인만 더 추가한 것뿐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의사당 건물화재 진상 조사 위원으로는 강영낙, 김창희, 김상태, 김상대, 박두순 의원을 지명

◇서기 박찬대

-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발신한 별지 「전력 배전에 대한 진정 및 결의서 처리의 건」 낭독이 이어서 미창 목포지점장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접

수 상황보고 및 진도 교육감으로부터 발신한 인사장 낭독과 부산행 여객 열
참 차량 증결 요청 건의문 및 권고문 제출 상황 보고가 있었음

◇김삼성 의장

- 미창 목포지점장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산업분과위원회에 회
부 검토케 한 후 차기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금일 오후 회의 및 명 18일
은 휴회하여 재명 19일 본 장소에서 회의 속개할 것을 선언.

(상오 12시 정각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2월 18일

시의원 김상태

시의원 박두순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59회 제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2월 19일 상오 10시 52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2월 19일 하오 5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청 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

출석의원 15명

결석위원 김일섭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총무과장 장건식 및 각 과장 교서무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제57회 제2차 목포시의회회의록 통과
2. 시의회 의사당 건물 화재사건 조사 결과보고

◆ 부의안건

제59회 제2차 회의시 동일함

◆ 토의사항

- 제59회 제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시의회 의사당 건물 화재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

◇김상태 의원

- 본 건 조사 결과를 개략 말씀드리다면 발화 상오 4시 40분이며 진화는 상오 6시경이었습니다.

원인은 OEC 후편에 사무소를 둔 태양개발주식회사의 「툇밥」 난로에서 인화된 것 같으며 한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OEC사무소 태양개발등 각각 방화 책임자가 결정되었으나 시의회 의사당만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범위는 시유재산인 상, 하층 각 68평의 건물과 도관증 변소 3평, 숙직실 일부이었고 인화장소인 소상임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회두 나달수씨만 단독적으로 정실적인 대역이었다는 것이 발견케 된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2층 건물은 상공회의소에서 시청이 일시 빌린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시유재산이란 것을 이제야 알게 되고 시청측의 관리불충분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정을 요리하는 의사당이 소진된대 대하여 도의적 책임자인 의장은 사임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은 강력히 이를 권고하는 바이다.

◇강영낙 의원

- 본 의원역 조사위원의 1인으로서 소방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방화수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등은 여사 방화대책이 불비된 당국을 불신 않을 수없으며 상품 재산등 보호에 대한 불안과 흥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서장과의 대철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에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의 빈약한 현소치로 390만원 받게 계상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사한 실정을 가안하여 금반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비상한 관심을 여기에 경주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며 우선 시급한 것이 지방재정으로 추적을 구인하여 용량 4, 50석의 철판 방화수통을 신조토록 할 육사시의 신속작업에 공하여야 할 것을 절실히 느껴지는 바이오니 각 의원에서는 차점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개편 문제에 대하여 과거 10수년 간식 근속공로가 있는 대원들을 모종 정치성을 내포하여 개편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전해 사실무근이라는 소방서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끝으로 의사당의 화기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김상대 의원

- 본 의원도 조사위원의 1인이나 김상대, 강영낙 양 의원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니 자세한 말씀을 생략하겠으나 발화당시 싸이렌 취명성을 듣고 그 길로 현장에를 나갔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실정을 소개한다면 소방대원은 방화용 수가 없었을 뿐 만들고 있었고 이미 시간이 늦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김상대 의원 발언에 의사당 소실 문제로 도의적 책임자인 의장이 책임을 짓고 사임 운운의 발언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즉석에서 그 발언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김삼성 의원

- 혹한의 일기를 무릎쓰고 임무에 당해주신 조사위원 여러분에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금반의 의사당 소실 문제에 있어서는 그 책임의 소재와 건물소유 책임 여부를 불문할 16명의 의의 대표자로서 미안한 감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 수로 우리 의원들은 가일층단결하여 맡은바 임무 수행에 돌진하여야 될 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김창희 의원

- 본 의원 조사단의 1인으로서 또 상공회의원 한사람으로 본 건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질 조사한 바 있었음 화재원인은 역시 태양개발에서 인화한 것 같으며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회두단독으로 대여한 대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본 건에 대하여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해건물이 13만 시민의 공유건물이라면 왜 집행부측은 이중대한 재산을 상공회의소에만 맡기고 무관심하였는지

의심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화재 당시 경비부알의 수도전이 녹이나서 뚜껑이 안에서 점다니 남교동 시장의 불행한 예를 보아서라도 망국은 왜 사전 관심이 없었으며 거반의 도로보수시는 이 중대한 소화전을 무시하고 매몰시켰는지 이해가 곤란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부언하고 싶은 것은 상공회의소라 함은 선진국가의 예를 보드라도 그 국가의 문화척도의를 엿볼 수 있는 단체인 것이며 시정을 요리하는 의사당의 양건물이 소진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일대관심을 경주하여 본 건 복구공사에 총역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정응표 의원

- 각 조사위원의 보고를 듣고 상세한 실정으로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대행정부 질의응답을 할 것을 동의
채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정응표 의원

1. 시의사당에 방화책임자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불의의 화재이였기 때문에 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부지였다
시간부진은 즉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락이 없었는가
3. 사유재산 화재 책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4. 소진된 재목정리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시청직원으로 하여금 관여케 한 사실이 있는가

◇김창희 의원

1. 화재현장에 시청 간부는 몇분이나 가보았는가
2. 현장에 일반 위문객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한 응집을 한 사실이 있는가
3.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하하여야 할 것인가

◇강영낙 의원

- 신년도 예산에 소방비가 계상된 바도 있고 금반화재 대한 것으로 더 상

세히 알기 위하여 소방서장을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하 시장

-시의회 의사당과 상공회의소의 겸용건물이며 중대한 시유재산을 소실한데 대하여 시민에 저분의회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물의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시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50년간임 현상대로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온 것이며 의사당의 방화 책임자는 결정 못하였지만 제반형편으로 의사당에 숙직원배치도 못할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의 방화책임자는 각기 주임이 맡게된 것일 상공회의소 화재재목정리에 대하여는 본인이 상공회의소에 사전연락하여 공매처분 그 대금을 예치토록 한 바 있었으나 상공회의소 측에서 책임자의 말은 아니나 금반화재로 인하여 제반인부임 등 경매에 보충하여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간부진의 현장 답사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만이 출장으로 인하여 불능이었으며 위문개응대는 우리관재계장을 시켜 그임에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애 저 의원들께서 화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누누 질문 하시여 거북한 입장이나 타인을 대역할 적에 형식적으로라도 일언반구 상의조차 없었던 상공회의소특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두신 의원

- 시유재산이며 유독 2층은 시의사당임에도 불구하고 남교동 시장의 예를 보고도 반성함이 없이 화기 책임자도 정하지 아니하고 숙직원도 안보냈다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함은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

◇하 시장

- 책임회피가 아니라 그 경위만을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영낙 의원

- 의사당에 숙직원을 파견 았았다는 것으로 비난 한 것이 아니고 본 청에

는 각기 회기책임자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거리가 떠러졌다고 하여 그 책임자도 결정 않았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 하겠다.

◇정응표 의원

- 타인의 대여한 시유재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 당하였을 적의 손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장건식 총무과장

- 본 건 계약서조문제 10조의거 임차인이 부하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정권 의원

- 근본요소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9,000연만환에 달하는 남교동 시장 소진시에도 종이 한 장으로 웃지겨 낙찰시킨 것으로 생각할 때 금반의 화재사건에도 여사전찰을 받으려는지 의심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설과장

- 김창희 의원의 질문에 소화전매몰을 말씀하시나 춘추계 사리 부설시에는 전혀없는 것이고 포장 도로시매목된 것이 수개처 있었으나 그 후 전부 찾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 시장의 신년도 시정방침연설이 있었음.

◇김상대 의원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예산안을 의회에 부의 할 때에는 필요한 설명과 재산표 및 부채표를 첨부케 되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각 사업장의 수지균형표가 누락된 이유
2. 조세법개정후 폐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렵세 및 금고세의 정리과목으로만 존치한 이유
3. 도로손상부담금 계상에 있어 자도차 15대를 보아T으나 시내에 자동차 15대 밖에 안된다는 이유
4. 칙량수수료와 설계수수료에 있어 현금 3,000환, 5,000환식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보는데 칙량수수료 100건 계상에 건단 600환밖에 안 본 이유

5. 용당 도선장 수입문제에 있어 본 의원이 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암암리에 누차 조사한 바 있었으니 본 의원의 조사한바요 예산안을 대조하여 볼 때 총액 400여만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에 참고에 공고자 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란다(상세 초안참조)

◇김상균 의원

1.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음료수에 있어서 특히 주변동의 공동수도원화책과 송수관 파괴부분 수리에 대한 구상은 없는가
2. 예년의 도로 보수상황을 살펴보면 무계획적이고 일반 시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3. 수도 특별회계 직원 정원초과 이유여하
4. 오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시측에서는 오물소제 수수료의 징수부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 못한다 함. 일반시민의 소리는 오물처리를 안 해주니 수수료 납부를 등한히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 여하
5. 국민반 운영 강화책이 원요한 바 그 구상 여하

◇정응표 의원

1. 용당 도선장 운영 문제에 있어서 큰 하물 같은 것은 타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가 있으니 집행부측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2. 그럴 자립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설치를 할 생각은 없는가 동정세 문제에 있어서 중앙동과 변동간의 균형으로 취하기 위한 혁신안은 없는가
3. 남교동 공익 전당포 화재로 인한 질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질옥의 근본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당초 대출액수만이라도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4. 국민보건정책면으로 금반 승소한 정병조씨 관계 토지에 가설운동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
5. 신년도 시장시정 방침 연설에 갓바위 삼학도 간 매립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6. 시장은 거반의회에서 신년도에 지방세 부과액의 증액을 앞으라고 활약하는데 7,000만원의 증액이유

◇김경인 의원

- 1. 위생 비설조를 정리화목으로 방치하였으나 도 예산편성시 타시군은 사전에 상도하여 보조교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당시는 이를 묵과하였는가
- 2. 작년도에 비하여 교부금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업세 위탁 징수를 모책함으로서 상공업자에 대한 계몽선전에 주력하고 영업세, 부가세를 저율도 인하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가로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가
- 3. 민원서류 교부에 있어 기록초본과 인감증명을 하부 하는데 국채화필 증명과 납세필 증명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불납 하였다 하여 제재하라는 조례 같은 것이 있는가 어디까지나 증명은 증명이고 납세는 납세라고 보아질 때 엄연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도 있기를 요망한다.
- 4. 작년도 금년도의 도배시 부과개수와 시측조정 부과개수를 명시하기 바란다.

◇강영낙 의원

- 1. 임업비 예산이 근소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
현금 국가적으로 산림녹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마당에 형식적으로 기념 행사비만으로 계상하였다
그리고 삼학도에서 채취한 임산물 처분비의 용도를 국명 하기 바란다 d 기회에 모학교에서 이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한다 그 이유여하
- 2. 토목비, 하수구비에 있어서 중요간선인 호남동에 비만 내리면 취사장에 물이 드러 주부들을 올린다 한다 이에 대한 조치있기를 요망한다.
- 3. 시립병원 운영에 있어 획기적이며 거설거인방안은 없는가
- 4. 징세비가 너무 많은 감이 있다
- 5. 나주 상수도 설치 문제에 있어서 나주읍의 민주당측 의원이 반대 운운의 말을 집행부측에서 유포하였다는 말을 들었음 나주읍의는 자유당의원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임 여사한 발설이 모종 정치적 본선이 개재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망한다.
- 6. 수특관계인 부임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인상이유를 묻는다

◇정응표 의원

- 1. 동정운영 방침에 있어 현행 23개동 행정구역으로 15개동으로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
- 2. 의사당 건물 화재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모 의원의 말에 의하면 방화용수 탱크에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못 뿜었다 하니 그 이유
- 3. 또 일설에 의하면 방수누전 뚜껑을 못해져서 이용을 못하였다 하니 왜 사전에 수시순열을 안해 두었는가 이에 답변을 바란다.

◇김성균 의원

- 각 지대간 연습 당시 펌프가 벗겨지는 사례가 허다하여 유사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니 사실인가

◇이정권 의원

-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서장을 출석시켜 금반의 화재경위와 답변을 청취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소방서장

- 금반 불의 화재로 인하여 의사당건물이 된대 대하여 소방책임자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금반의 화재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니 확실한 것은 발표불능이나 상공회의소 건물에 야간 숙직인 1인도 배치 안 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는 소방시설의 부족과 일반의 시민의 협조가 원만치 못함을 통절히 느끼는 바이며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갔으나 소화작업을 신속히 못하였다는 문제는 소방차에 소대를 방비할만한 물은 준비 한 것이나 불여의이 있던 것이며 조수 간조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대간의 호수를 바꾼다는 문제를 방식착오에서 기인하 것이지 다른 염려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증원에 대한 산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으나 공무원법의 규정된바 보수는 없고 향토방위의 애향심의 발효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증원하는데 매로가 극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반의 화재에 있어서 소방사업도 작전상 권범으로 본 건물은 포기하고 주변 건물의 연소 작업을 방지하였던 것입니다.

◇강영낙 의원

- 소화대책과 방화대책이 완비되지 않는한 일반시민들은 고침안면 할 수 없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집행부측은 발화즉시 진화할 수 있는 탱크차를 준비할 용의는 없는가

◇소방서장

- 그러한 점을 구상한 적은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은 화재로 조기발견이 긴요한 것으로 감시초시설이 긴급한 문제로 이에 소요되는 시비직원 10명을 요구하였으나 4명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5, 60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탱크차를 개조이용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경인 의원

- 의용소방대원의 인사교류문제에 있어서 역사가 깊고 단결이 견고하였던 야당계에 갔다온 대원들은 축출하고 여당계측에서 등용시켰다는데 이에 수반한 기술문제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는가

◇소방서장

- 정치문제 개재 기술문제 부족등 전연 사실무근이다.

◇김삼성 의장

- 오전회의 휴회선언 (하오 1시 50분 현재)

◇김삼성 의장

- 오후회의 속개선언 (하오 3시 10분 현재)

◇박두순 의원

- 지방자치법제 19조에 규정된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전당포의 소적대지를 대여한 사실을 행정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망한다.

◇총무과장 장건식 답변

- 김상대의원의 재산표 및 부채표 첨부문제는 지당한 말씀이나 사무간소화를 도모한 것이며 별도제시한 재산목록으로써 아뢴 것으로 맞는 것입니다. 김성균의원의 국민반운영 문제는 신년도부터는 동정강화를 지표하고 반장강습회비 및 우수한 반장에 대한 표창등등 목적인 것입니다.

정응표의원의 동정세 공정부과 부균등 문제는 특별회계의 원만한 운영난에 봉착하였기로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도당국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수폐합문제는 근자 신문보도와 여히 동장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김경인 의원의 민원서류 발급시 국채 소화필증 첨부문제는 과거에 총리령으로 평면 소하시에는 있었으나 현금 직접소화를 하기 때문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응표 의원

- 동정세 부과 문제에 있어서 빈동과 부동을 대조하여 불적에 동정운영의 경비는 대동소이 인데다가 동단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현저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제도를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하 시장

- 이 문제에 있어서 최초에는 시에서 일괄한데 부과하였든 것이나 소정의 세율은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동정운영에 더 일층 암영을 초래하였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원 여러분의 당해하에 그 방법을 변경하여 현행제도를 채택한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하여 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김경인 의원

- 현금의 23개동을 축소한다는 안에 대하여 현재의 동은 잡부금을 징수하는데 시와 시민간의 매개체 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는 동정강화를 가일층 주력함으로써 동에 있어서도 시정의 일익으로 맡았다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될 것이다.

시와 동이 유기적인 활용을 한다면은 징세비 직원을 채용 안트라도 이로써 감당할 수 있는 방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23개동의 축소안을 극력주장하는 바이다.

총예산 4분의 1이 인건비로 소모되는 감이 있으니 감원등의 방안은 어떨는가

◇김성균 의원

- 동정세부과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당시와 같이 원활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현행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신중 검토하여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재무과장 이현두 답변

- 수렵세와 금고세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없어지 않을 예상하여 론치 과목으로 둔 것입니다.

정응표의원의 시세 7,000만환의 증액이유를 물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는 75% 징수예상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0% 징수목표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옥세의 증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것이며 취득세 인상은 금년도의 물건취득의 예를 감안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인 의원

- 부과개수문제는 작년도 도배시 1,900만개에 시에서 1,600만개이고 금년도 도배시 1,800만개에 1,450만개 계상한 것입니다.

국세교부금의 위탁징수문제는 식세청측에서 세무서 소재시읍은 세무서측에서 직접징수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창희 의원

- 법정회의시간인 하오 4시가 박두하였으니 회의시간의 연장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농림주무 손점수 답변

- 삼학도 보호림별채 문제에 있어서 도당국이에 보호림구 해제요청을 한바 있었으나 보호림이기 때문에 별채허가는 불능이나 삼학도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당국의 내락을 얻어 경쟁입찰로서 그세 금만환을 수입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춘흥 답변

- 호남동 하수구 준설 공사 문제는 예산관계로 불여의인건이며 인부임 인 상 관계는 내무국장 통첩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적재선 신조 문제는 방금 중앙에 서류를 품신중에 있어 재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성균의원의 수특 회계개정원 오 - 바 문제는 현정원으로는 미급된 까닭이 며 주변동 급수완화 문제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용수부족으로 부득이한 형편 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 도선장문제년 중12월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수수료 징수 문제는 개인적 사업인 것 같으니 없기를 바랍니다.

○ 자동차 15대 계상이라 함은 관용차제의 당시에 적을 가진 영업차를 말한 것입니다.

◇강영낙 의원

- 나주 상수도 문제에 있어 읍의 민주당 계 의원들이 반대하였다는 말을 하시장의 언질로써 발설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명 있기를 바란다.

◇건설과장 이춘흥

- 거반 나주 유치사 낙성식에 본인이 참석하였을 적에 읍장의 말이 과거에 는 자유당 의원이 반대하나 현재 민주당의원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복명 하였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낭설인 것 같습니다. 즉 비료공장측의 중 상인 것 같습니다.

◇수사과장 김연수 답변

- 위생비 보조 문제에 있어서 당시 출신도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누차도당국에 절충하여 보았습시다라는 현금정리과목으로 존치한 것은 보조이사가 있기 전이니 부득이한 것입니다.

○ 오물처리방안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는 조례 통과시 상세한 같음을 하겠습시다라는 인분탱크차 활용에 획기적인 채택 강구중입니다.

◇시정주무 박찬대

- 공익전당포 소적세 대여문제로 지방자치법제19조를 인용하심 이는 동조의 5항, 6항은 적용 안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동현 시장

-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주셔서 대단 감사함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공익전당포 입질자에 대한 일부 변상 문제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도 누차 고려한 바 있으나 현재의 당시 재정으로 고충을 안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여러 의원등과 현지를 실제답사하여 설치 할 것을 구상중에 있는 것입니다.

갯바위 매립공사에 언급을 피한 것은 아직 인가가 안 나온 문제로 발표치 못할 단계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상수도 관계만 아니면 정상적인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것이나 현금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세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반하여 세출면은 방대하여진 까닭으로 직원의 감원도 구상하여 보았으나 50명정도를 주려 보았자 북가 100만원 가량을 얻게 되는 것이나 정량의 사무집행에 지장만 있는 것입니다.

시립병원문제는 항상 두통거리입니다.

입원환자 30명이라면 유료환자는 6, 7명밖에 안되는 것이니 그 밖에는 상이군경이나 극빈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약가도 인상하여 보고 자체수입을 증용하여 보았으나 불여의 하기로 인원을 줄이기로 결정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선장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현재 사실상 특별회계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낙 의원

- 행정부와의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회의규칙 의거전 안건 각기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이정권 의원

- 행정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으나 본 의원의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예산안의 윤곽을 알기 위하여 예산심의회와 아울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

재청---3청

◇정응표 의원

- 가무감사는 년2회에 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추후결산 심의시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김경인 의원

- 정식적인 사무감사가 아니고 대체적인 현행운락을 알자는 것이니 가할 것 같다.

동의.

표결 결과 재적 15명중 가 7표 부결

◇정응표 의원

- 시유재산 감정 3명을 선정하였으나 표결 후 수정을 못하였다. 그러나 희망 의원도 있을 것 같으니 번안 수정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재적 15명중 가 15표 가결

강영낙, 조양순 의원을 추가지명

◇박두순 의원

- 재건축주택 건축문제에 있어 보광동에 61동 대성동에 10동을 건축중이나 대성동분이 미완인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조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그 경위

를 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조산위원으로는 박두순, 김상태, 김남진 의원을 지명

◇김삼성 의장

- 폐의선언.

(하오 5시 25분 현재)

위 회의록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2월 20일

시의원 김성준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59회 제4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2월 27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2월 27일 하오 4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천철수, 김일섭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총무과장 장건식 및 각 과장
교육청서무과장 김용준
7. 보고사항
 1. 각 분과위원회 회부안건 심의 상황보고
 2. 김삼성의장 및 장건식 총무과장 상경 결과보고
8. 부의안건
 - (1) 단기 4288년도 제6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88년도 제5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목포시 국민 재건 주택 특별회계 설치안
 - (6) 단기 4290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7)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8)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국민재건 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 목포 시유재산 취득의 건
 - (가) 북교동 양수장 부지매순의 건
 - (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구입의 건
- (10) 목포 시유재산 매각처분의 건
 - (가) 대지
 - (나) 가옥
 - (다) 제3수원지 간수힐소(경비실)
 - (라) 승용자동차(1호차)
- (11) 단기 4289년도 일시차입의 건
- (12) 목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 (13) 목포시 공동 하양장 사용 조례 개정안
- (14) 시리 목포 조례 개정안
- (15)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
- (16) 목포시 도장 사용료 조례 개정안
- (17) 목포시 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안
- (18)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 (19)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 (20) 토지소유권 이전 말소등 등기제소의 건(대 대건기업 대표 정병조)

9. 토의사항

◇김성균 의원

- 문교사회 위원회 관계 심의 결과보고

첫째 시립병원 관계는 원장을 수차 출석케 하여 설명을 들은 연후에 심사숙고하여 한번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청사수리를 요청하여 원아대로 내무여에 넘겼습니다.

둘째 교육청 보조금 1,520만원에 의아를 있기에 도문정과장을 심방로 타진한 바 있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중앙에 절출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 다.

셋째 학교 신축 문제에 있어서도 누차 논의를 거듭하여 현금의 학교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2, 3부교수를 불편케 되는 것으로 이를 완후시키기 위하여 무수정으로 내무위에 넘겼던 것입니다.

◇김상태 의원

- 산업위원회 관계 심의 결과보고

본 위원회 관계는 거개보조에 의존한 예산으로서 적당한 예산 조치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으며 중동시장은 그면모로 보아서나 시장으로서 유지불능이 것이니 시장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총무과관재계 소관으로 넘길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정응표 의원

- 내무 분과위원회 관계 심의 결과보고

부의안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7항, 제20항 등 내무 분과위원회 소관 각 안건등에 대하여 신중 심의한 결과 특히 금년도 예산은 나주 계통 상수도 시설문제에 치중하고 회소한도의 건축재정을 수립한 것과 관영요금인상에 수반한 적절한 조치이옵기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를 보았으며 문사 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도 현실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위안통과를 보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김삼성 의장

- 상경 결과보고

나주 상수도 시설 공사비, 남교동 공설시장 복구비, 공설시장 중소상인 용자 관계 및 갓바위 매립공사에 대한 전망등 제사 원민히 추진될 수 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총무과장 장건식

- 상경 결과보고

흙무관 제품 인수차 상경 하였던 바 합격품이 2,749개일 불합격품이 42개이었으나 완전한 검수라고 할 수 없으며 회사측에서 수송 책임 및 지하에 매 목하여 수압검사까지 필한 연후 완전한 검수가 된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김남진 의원

- 과반 제2차 회의석상에서 산업분과위원회로 회부되었던 OEC 주재관의 주택문제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해주택의 임차인인 육옥우씨로부터 금월말까지 명도하지 않으면 국방부를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육씨측으로부터 500만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재관의 주택으로는 가장 적당한 곳이며 몇 개 하역업자 만으로는 일임이 불가능한 것이니 해송, 육송, 하역업자 및 도정업자등을 총 망과하여 자금을 거출토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집니다.

◇정응표 의원

- 중요 부의안건에 산적하여 있는 시기이니 본 건 행정부측에 일임 처결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남진 의원

- 대체로 면의를 존중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 하겠으나 사실이 아닌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정부나 집행부를 괴롭게 하는 부류가 있으니 항동시장 개점후 4, 5통의 거짓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시장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반대하는 진정서로서 그 사실을 조사한바 69명중 탄원서에 무인자(摺印者) 서명과 인장이 부합치 않은 자, 무인자(摺印者), 불참자 포함 64명이며 실제 작관 하는 사람은 5명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1개인의 이권을 위하여 그릇된 판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해시장 개점후 권리 매도와 일시대여 등 수천만환의 이득 취하고 있는 부류들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오니 의회 의결로써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 그 사실을 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정응표 의원

- 동의에 참가 하겠다.

항동시장 개점후 관련성 없는 일부시의원으로 하여금 연고권이 없는 상인을 있는 것처럼 하여 그 체면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 20만환을 납부 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토록 개점허가를 안한다는 화제거리가 유포되고 있으니 이 문제도 겸하여 조사토록 할 것을 참가한다.

동의 수락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조사위원으로는 김남진, 명남철, 김성균, 김경인, 강영낙 의원을 지명

◆ 부의안건

- 단기 4288년도 제6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영낙 의원

- 금반 의회의 부의안건에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거개 예산안과 관련성이 개재된 것이니 조례개정안을 먼저 심의하고 예산안을 후순으로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이 없음으로 폐지

◇김창희 의원

- 본 건 추경예산안은 도로부터의 보조를 계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심토의한 안건이니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단기 4288년도 제5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명남철 의원

- 본 안 역시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는 강영낙 의원의 동의를 살려 조례개정안을 선차심의회할 것을 선언

- 목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김남진 의원

-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목포시 공동 하양장 조례 개정안

◇정형표 의원

- 본안역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 끝에 심의한 것이니 도로변에 점유한 노점등으로부터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시립목포병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상대 의원

- 본 건은 원을 환으로 개정하였으며 문사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것이니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목포시 오물 소제 수수료 조례 개정안

◇명남철 의원

- 본 안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목포시 도장(屠場) 사용료 조례 개정안

◇정응표 의원

- 본 건 조례안을 일별컨대 국내주요 각시 보단 당 시분이 가장 저렴하다.
현금 당시의 도장은 이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는 시내에서 돈(豚) 1두를
도살하기 위하여 이로면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니 시내요소에 가도살장 1개
소를 설치하도록 차후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토록 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통
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목포시 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안

◇이정철 의원

- 본 건 역시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 오전 회의 휴회선언

(하오 12시 5분 현재)

◇김삼성 의장

- 오후 회의 속개선언

(하오 1시 30분 현재)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영낙 의원

- 본 건에 있어서는 수3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심의한바 있었으나 대체
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별로 축조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각 관별 심의중 각 의원과 집행부 간 질의 응답 내용 생략 (별첨 초안 참
조)

◇명남철 의원

- 본 건 부분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끝났으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응표 의원

- 본 건에 있어서는 관별 축조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의심나는 항목만 지적하여 질의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심의중 질의응답 내용 생략(별첨 초안 참조)

◇정응표 의원

- 본 건 역시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성균 의원

-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영낙 의원

- 본 건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목포시 국민재건 주택 특별회계 설치안

○ 목포시 국민재건 주택 세입세출 예산안

◇김성균 의원

- 두 건공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강영낙 의원

- 금일의 제4차 의회는 기록적인 회의 진행을 하였으니 남은 안건은 명일 심의키로 하고 산회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동정 특별회계 관계상도 절충위원으로 김성균, 조양순, 임석희의원을 지명

폐의 선언.

(하오 3시 5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2월 27일

시의원 김상대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59회 제5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2월 28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도 12월 28일 하오 4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의사당(목포시청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조양순, 천철수, 임석희
6. 출석공무원
의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김용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산정1구동민으로부터 제출한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부의안건
목포 시유재산 취득의 건
가. 북교동 양수장 부지매수의 건
나. 승용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 구입의 건
승용자동차(1호차) 매각 처분의 건
- (2) 목포 시유재산 매각 처분의 건(대지 및 가옥)
- (3) 제3수원지 간수 철소 매각 처분의 건
- (4) 토지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제소의 건
- (5) 단기 4290년도 일시 차입의 건
- (6)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 (7)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의 건

8. 토의사항

- 산정1구동민으로부터 제출한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서기 박찬대

- 진정서 낭독

◇김삼성 의장

- 본 진정서에 대하여 토론하기 전에 산정1구동장이 당의사당에 출석한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기로 할 것을 제안

◇산정1구동장 김수만

- 본 건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여히 해도로를 통행하는 일평균 인원수는 학생 3,000명, 주민 2,000명 계 5,000명을 산하는 형편으로 해도로의 절대 필요성을 역설하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음

◇강영낙 의원

- 시민 5,000여명이 총 분기하여 진정한 당시 발전상 관련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경솔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시건설과장을 출석시켜 해당도로의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건설과장 이춘흠

- 본 도로는 시자체에서 볼 때 계획선은 아닙니다.
실은 88년도 예산에 백만환을 계상 하였으나 문태고등학교에서 부담키로한 200만환을 납부치 않기로 그 계획이 좌절되었던 것이며 시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여 보선 사무소장을 심방 교섭하였으나 우리와는 정반대의견이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강영낙 의원

-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 여하

◇건설과장 이춘흠

- 시자체에서는 계획선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미래지사를 말씀드리기 난한 문제이나 삼학도 공사가 완성될 때 역구내의 확대 및 철도선의 계획등 무리한 요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영낙 의원

- 삼학도 공사, 갯바위 매립 공사등 완성되면 장래의 목포로 보아서 중요한 지대라 아니할 수 없다 가능한 한준치 시키는 것이 시가 할 것 같다.

◇김창희 의원

- 될 수 있으면 갯차운 길을 걸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5,000여명이 진정한 본 건에 대하여 묵시할 수 없는 일이니 내무위원회에서 일임 순천철도국 및 교통부장관에게 적극적인 진정을 하것케 할 것을 동의.

재청---3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북교동 양수장 부지 매수의 건

◇서기 박찬대 이 건설과장

- 제안 이유 설명

◇김경인 의원

- 본 건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심검토한 바 있으나 3년간의 임차료를 미지불 하였다 하니 이에 수반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부지대는 적의사정하여 구입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구입의 건

◇김경인 의원

- 1호자동차 매각처분의 건과 일괄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강영낙 의원

- 1호차를 구입한 것이 1년간밖에 안 되었는데 구입 당초 신중을 결하였다는 점에 시중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금반에 구입하려고 하는 차에 대한 가격이 가공적인 수자로 보아진다. 현금 경향 각지에서 넘버까지 부쳐서 200만환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경인 의원

- 1호차를 매각하는데 시장 전용차를 구입하 계획은 없는가.
3개년간에 공하여 장거리 공사로서 구입하는대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1호차의 당초 구입 가격과 현금까지의 수선비 소요액을 명시하기 바란다.

◇서기 박찬대

- 1호차의 구입은 4288년 10월 22일자 230만환에 구입하였으며 차체는 시보레 1946년제이고 수선비는 현재까지 67만 6,300환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전용차는 구입만하면 쟁차를 겸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응표 의원

- 1호차는 방치하여 들수록 손해만 입게 되는 것이니 양건 공히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강영낙 의원

- 구입당시 신중을 기한다는 견지에서 집행부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의회측에서도 1인 정도 파견하여 물색토록 할 것을 동의에 참가

동의집 수락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구입시 관여자는 김상대 의원을 지명

○ 목포 시유재산 대지 및 가옥 매각 처분의 건

◇서기 박찬대

- 제안 이유 설명

◇김경인 의원

- 본 건 시유재산 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요액만을 사정매각 처분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제3수원지 간수힐소 매각처분의 건

◇서기 박찬대

- 제안 이유 설명

◇김성균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토지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제소의 건

◇서기 박찬대

- 제안 이유 설명

◇이정권 의원

- 원안통과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단기 4290년도 일시차입의 건

◇서기 박찬대

- 제안 이유 설명

◇김성균 의원

- 원안통과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정응표 의원

- 오전회의 휴회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 오전회의 휴회선언

◇김삼성 의장

- 회의속개선언.

(하오 1시 20분 현재)

○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4290년도)

◇정응표 의원

- 본 건 심의에 있어 세목별토론을 중지하고 전체면에 걸쳐 대집행부 질의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정응표 의원

1) 향동에 신설할 국민학교 부지를 타처에 구할 용의는 없는가

2) 풍문에 의하면 해부지가 모 교육위원 소유라는데 집행부와 사전 모종 협약이라도 있었는가

◇김남진 의원

- 1) 사친회비를 면제할 용의는 없는가
- 2) 선창가에 학교를 신축하는 이유 여하

◇교육청 서무과장

- 특별 부과금 부과 경의 설명

항동국민학교라고 예산서 부기에 기입하였든 것은 가칭으로 기재하였든 것이며 결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문사위 심의시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문제는 국민학교 설치와 재산 취득에 관한 안을 상정할 때 논의할 문제이오니 그 위치와 부지 물색은 여러분의 지시에 따라 결정지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를 품신하려면 부지선정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부지의 소유는 남북면업 이오나 피차사전에 무리한 요구나 간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친회비 면제 문제는 당시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하여 사친회비 징수여부는 별도 지시하겠다는 상부의 명령이며 이 건에 대하여 중앙에 조복중이라 하오니 차후의 지시 여하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의원

- 각 항목마다 잡급이 계상되어 너무 많은 감이 있는데 그 이유 여하

◇서무과장 김용준

- 문교부지시의 통일된 양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응표 의원

- 서무과장은 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한 것인지 서무과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인지 명백히 하기 바라며 교육감은 1년 유여에 걸쳐 출석이 없었으며 선창가 공장지대를 지적하여 학교 부지로 하고 이처럼 방대한 예산을 내 놓은 것은 인기 전술책이 아닌가 의심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현하 시민의 경제 상태가 도탄에 빠져 있으니 본 건 새로운 검토를 하여 특부전액 삭감하는 것이 지당할 것 같다.

◇김남진 의원

- 본 건 예산안을 검토할 때 무모하기 짝이 없다.

본 건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이 없이 긴축예산을 수립하였는데 서무과장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양식에 부합시켰다는 등 답변으로는 흥분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급식비 및 연구지도비 등 작년에 없는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의무교육 취약 아동 조사등도 시기적 사무이니 교직원을 동원하여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이다.

◇서무과장 김용준

- 교육감은 장기간 와병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학교부지대는 전액 국고 보조를 양청중에 있는바 보조금 삭감을 우려하여 계상한 것인바 내시여하에 따라 경정하려 한 것이고 중앙에 신청할 적에 부지 예정 정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칭으로 하여 두었으나 그 후보지는 애저분의 의견에 조차 결정 지을 것입니다.

급식비 계상은 극빈 아동에게 우유가루를 끓여 먹이려는 조치일 연구지도비 등 예년에 있던 것을 관으로만 독립시킨 것입니다.

◇명남철 의원

- 문사위원 5인은 전혀 시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이나 우리가 심의할 적에도 이 점을 극히 우려하여 신중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란 유달학구등은 6학년까지 2부교수를 불면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고 특부 전액을 삭감한다면 방대한 예산으로 교육청의 유지비에 불과할 것이니 그 의견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강영낙 의원

- 특별부과 전액 삭감은 고려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여 전액계상도 불가능한 형편이니 5, 6개월 앞의 경제 공황을 야기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도의 실적을 조감하여 부과토록 하는 것이 지당할 것 같다.

◇김경인 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으나 초예산 1억 7,000만환에 지방인부담이 6,000만환

인 것이다.

현금의 실정으로는 신영비보조를 중앙에서 받아들 수 없는 것이고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금년에는 중단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며 특별부과를 없으면 재정부족 보조도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니 현실만 직시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앞날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계수적으로 타산하여야 될 수 있는 바이다.

◇정응표 의원

- 학교를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시민의 담세력을 감안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다수 적령 아동들이 무엇 때문에 취학을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갓바위 매립공사가 완성되면 새로운 대목포가 건설될 것이며 이에 따라는 학교 부지 선택도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본청 예산은 시유재산을 매각하여서까지 상수도 공사에 치중하고 있는 이 때 시전반적인 입장에서 이중, 삼중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다.

◇김창희 의원

- 금년 중에 8학급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2부, 3부 교수를 면케 될리는 없을 것이니 13만 시민의 담세력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이다.

◇강영낙 의원

- 본 예산안 전항목을 문교사회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케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재적 13명중 가 5표 부결

◇김일섭 의원

- 2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 속개선언

(하오 3시 40분 현재)

◇정응표 의원

-강영낙 의원의 안은 부결되었으나 교육위원회는 맹목적으로 본 예산안 통과만을 교집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안을 시민의 실정에 부합토록 재편성할 것을 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동의.

재청---3칭

이어서 김경인, 강영낙의원의 찬성 발언이 있었음

표결 결과 재적 13명중 가7표 가결

◇김삼성 의장

-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명 29일까지 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문사에서는 29일 오후 1시까지 내무위원회에 회부심의토록 할 것이며 제6차 본 회의는 재명 80일 오후 1시 정각 개최할 것을 선언

폐의 선언.

(하오 4시 1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시의원 박 두 순

시의원 이 정 권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59회 제6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2월 30일 하오 1시 1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2월 30일 하오 8시

3. 장 소 : 목포시의회의사당(목포시청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상대, 김상태, 박두순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김용준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 토의사항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명남철 의원

- 본 회의를 당분간 휴회하고 내무 문사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 내무문화위원회 개최 - 생략

◇김삼성 의장

- 속개 선언

(하오 1시 50분 현재)

◇김성균 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재차 회부한 안을 검토할 적에 특별부과금 당초 원안 개당 90전을 개당 80전으로 삭감하여 총예산 1억 7,129만 3,000환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문제의 핵심은 금년도에 학교를 건축하느냐 안 하느냐의 양자일 것이고 당초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이 비트되었던 것이니 개당 80전으로 삭감하였다 하여 받아 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중검토 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특별부과금 2,900만환 전액과 이에 수반한 신설 학교 부지 구입비 보조 1,520만환 계 4,420만환을 삭감하여 세출에 다음과 같이 삭감수정한 안을 통과시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출 삭감 수정 내역 생략(후면첨부 요참조)

그리하여 결국 세입세출 총액 1억 2,709만 3,100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김삼성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회부한 안과 문사위에서 재수정한 안을 신중 심의한 바 있었으나 가부결론을 못 본 채 본회의에 상정케 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의원

- 현금의 실정으로 보아서 사친회비를 전폐하자는 것이 민성이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상 사친회비 징수를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질 때 이중, 삼중으로 교육세만 증가하게 된다면 도탄에 빠져 궁지에 헤매이고 있는 일반 시민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 하는 바이다.

◇김남진 의원

- 회의 규칙 제43조 의거 내무위원회 심의없이 본안을 심의할 수 없을 것이다.

가부간 내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드린 이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김삼성 의장

- 내무위원회를 개최키 위하여 20분간 휴회할 것을 선언

○ 내무위원회 개최

이정권, 천철수, 임석희, 김일섭 의원 퇴장

◇김삼성의장

- 속개 선언 (하오 3시 40분 현재)

◇강영낙 의원

- 금번 개최는 제59회 정기회의는 금중대한 교육위원회 재편성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일부의원이 퇴장한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김창희 의원

- 시민의 경제력 부담 경중을 논의하는 중대한 회의이니 만큼 퇴장한 의원들의 참석을 종용하고 금일의 최종시간까지 회의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 재청---3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 휴회선언 (하오 3시 45분 현재)

하오 5시 40분 임석희, 김일섭, 이정권, 천철수 의원 참석

내무위원회 개최 생략

◇김삼성 의장

- 속개 선언 (하오 6시 정각)

◇내무위원장 김삼성

-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 특부 개당 80전으로 부과할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성균 의원

- 삭감하려면 전액 삭감하고 불연이면 벽돌 건물을 세우도록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문사위에서 통과를 본 4,420만환을 삭감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3청

◇정응표 의원

- 내무위원의 1인으로서 곤란한 발언이라 하겠으나 전차 본 의회에서 시민의 경제 상태가 꺾박할대로 꺾박하여 있는 시기이니 교육위원회에 재고할 것을 조건으로 반환하였든 것이다.

그 내용을 검토컨대 개당 90전을 80전으로 10전씩 삭감하여 세출면 기설학교의 기구비를 삭감하였든 것이다.

현존 학교의 유지비를 삭감하여 신설학교를 축조한다는 것이 정당한 논법이며 합리적인 처사라 하겠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추가예산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본 예산을 제출하였다고 보아질 때 왜 꼭 개당 90전이 필요하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이를 주장하는가 양심있는 답변을 요망하는 바이다.

◇김남진 의원

- 절대 필요성 있는 예산을 편성토록 전차의 회에서 누수 촉구하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 취학비등의 과목은 존치시켜 놓고 기설학교의 아동용의자 구입비 등을 삭감 시켰다는 것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교육청에 비치한 사무용 비품등을 매도 충당할 용의는 없는가

◇명남철 의원

- 전차회의에서 문사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을 반대하고 또 다시 금차 회의에서는 특부를 부과하자는데 가결을 본 내무위원회의 조령모개식을 비난하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삼성 의장

- 학교를 건축하지 말자는 조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창희 의원

- 우리 나라의 의무 교육제도가 일시이래 우리 국민은 교육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학교를 건축하려면 특별 부과금도 부담하여 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국민교육에 관심이 지대한 우리 국민성에 학교를 건축하느냐 방치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판국에 금년도만은 학교 신축을 보류하자는 의도는 현하의 실정이 우리의 생활요소를 간략하여서라도 이를 부하 할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니 전체 시민의 흥중에는 자체를 갈키는 것보다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는 것이 이구동성의 부르짖음이 일 것이다.

당시는 당면한 중대한 사업으로 상수도공사, 삼학도 공사, 갯바위 매립공사 등을 목척에 두고 있는 시기이니 교육 공무원이 조금더 수고를 하여 현금의 2부제를 3부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 특부를 부과하자는 안에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서무과장 김응준

- 공사다만 하신 가운데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일 동안 노고하신데 대하여는 환송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생활 궁핍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교육사업도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여하한 와중이나 치열한 전쟁속에서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 교육 6개년 계획에 수반한 년차계획에 의한 것이고 금반에 또다시 교육위원회에서 개당 10전씩으로 삭감하게 된 것이니 심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것을 전제로 부대 공사비로 건물만 있으면 책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할 수가 있건케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 취학비는 의무교육 실시에는 취학독려가 가장 긴요한 것으로서 중앙의 지시에 조차계상한 것입니다.

◇강영낙 의원

-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혹은 교육사업을 위하여 갑론을박 할 적에 단 무자의 심정을 추찰하건대 의롭기 한량없는 것이다.

외국 원조로서 능히 학교를 건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민부담이 아니면 아된다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 시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인 대통령이나 문교부장관이 책임지을 문제라고 본다.

현하 시민의 경제상태가 짐을 문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고 명춘정수시의 난색 있음을 고려하여 세입의 삭감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안과 동일하게 4,420 만환을 삭감하고 세출은 다음과 같이 수정 삭감할 것을 제2안으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세출 삭감 수정 내역 생략(별지 초안 참조)

◇서무과장 김용준

- 의결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마는 특부를 전액삭감하게 되며 재정부족보조도 가공적 수자인 것이니 삭감하여야 될 것입니다.

◇정응표 의원

- 5개 국민학교의 자재가 왔다는데 예산에 반영 안된 이유여하

◇서무과장 김용준

- 예산외취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인 의원

- 아무리 논란하여 보았자 묘안이 안 나오는 것이며 김성균 의원의 제1안과 강영낙 의원의 제2안이나 왔으나 재정부족 보조가 가공적 수자가 되는 것이니 너무 무리한 조치가 되는 것 같다.

그리하오니 집행부측에서는 현상유지를 견지토록 하여 1개월간 가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할 의결부와 집행부 합세하여 재정부족 보조를 적극 호소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로 보는 것이다.

본 의원은 토론 종결과 아울러 이 안을 제3안으로 제기하는 바이다.

◇정응표 의원

- 예산 편성이 완성된 후에도 줄등말등한 보조를 예산도 짜기 전에 당국에 거모하자는 것을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자승자박의 격이 되는 것이다.
누차 발언한바 있지만은 우리 목포시는 상수도 공사, 남교동시장 복구공사 등등 본청 총예산을 여기에 총 집중 시키고 있는 판국이니 금년만큼은 시민의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동들의 불편이 좀 있고 교육공무원의 수고가 가중하다 할지라도 문교사회위원회로의 수정안인 제1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이다. 아울러 토론종결 할 것을 동의.

재청---3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삼성 의장

- 제1안, 제2안, 제3안의 표결할 것을 선언

표결 상황

- | | | |
|-------------|--------------------|----|
| 1) 김경인안 제3안 | 재청없음 | 폐기 |
| 2) 강영낙안 제2안 | 재청없음 | 폐기 |
| 3) 김성균안 제1안 | 재청---4칭, 7칭까지 없음으로 | 폐기 |

◇김삼성 의장

- 회의규칙 제44조의거 각 안 공히 7칭이 없음으로 폐기할 것을 선언
따라서 원안(교육위원회안) 밖에 안 남았으니 원안을 표결하기 전에 5분간 휴회할 것을 선언

◇김삼성 의장

- 속개 선언

(하오 7시 55분 현재)

원안 표결 결과

재석 13명중 가없음 폐기

◇김삼성 의장

- 자연폐기 되었음을 선언

◇서기 박찬대

- 전차회의에서 통과를 보게된 각 조례 개정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로 되어 있음은 오기이었으니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성 의장

- 폐회 선언. 곧이어 제59회 폐회식이 있었음 (하오 8시 정각)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월 4일

시의원 강 영 낙

시의원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페이지 누락 있었음.